

제2장 상품 무역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2조 목적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무역을 자유화한다.

제2.3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반영된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 그 당사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특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시 그러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시 적용 가능한 더 낮은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가 상품에 대하여 지불한 관세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제2.5조

관세 양허의 가속화

1. 당사국은 언제라도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일방적으로 개선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국은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린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부속서 2-가에 반영된 양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양허의 일방적 개선 또는 가속화 후, 당사국은 해당 연도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국의 특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국은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그러한 날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린다.

제2.6조 상품 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한다.

제2.7조 농업 수출 보조금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하여, 2015년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각료회의 결정」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2.8조 통과 중인 상품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5조제3항 및 무역원활화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 통과 중인 상품의 통관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한다.

제2.9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경우 상품이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가. 그러한 상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나. 그러한 상품이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를 가진 경우, 그리고

다. 그러한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무관세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10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가 적용되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2.11조

수량제한 및 비관세 조치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

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쿼터, 수입이나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가 적용되며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나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허용된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12조

수입허가

1. 수입허가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며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내에,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기존의 수입허가절차¹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¹ 이 항에 언급된 기존의 수입허가절차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아직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지 않은 절차이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제2.13조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세 외의 것,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3조 범위 내의 세금과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하는 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추가 관세 외의 것을 말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14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2.15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연도에 원산지 농산물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발동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합치하게,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그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 조치가 부과된 특정 연도의 연말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2-나의 적용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당사국의 양허표에서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3장(무역구제)에 따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또는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따른 조치

5.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부과

한 후 60일 내에,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그 서면 요청의 접수로부터 45일 내에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2.20조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부속서 2-나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2.16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9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2.17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2.18조

양허의 수정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관세 양허를 이행하는 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상에 참여한다. 그러한 협상에서,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것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다른 쪽 당사국에 더 불리하지 않은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양허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한 협상은 그 밖의 상품에 관한 보상 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보상 조정을 포함하는 상호 합의된 협상 결과는 제12.2조(개정)에 따라 이 협정에 통합된다.

제2.19조

접촉선

양 당사국은 소통 및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장에 대한 세부 연락처 정보를 교환한다.

제2.20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품무역위원회는 부속서 2-가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각국의 특혜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고, 적절한 경우 협의를 진행하는 것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수정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 양허표의 전환을 포함하여, 기술적 수정을 준비하는 것
 - 다.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
 - 라.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 특히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거나 양 당사국 간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4. 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상품무역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5. 상품무역위원회는 최소 연 1회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상품무역위원회는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에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철폐된다.

1)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3”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5”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3)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7”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10”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5)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15”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SL”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각 당사국의 관세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기준관세율에서 최종관세율로 인하된다.
2.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X”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은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배제된다.
3.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8년 1월 1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과 2016년 1월 1일에 유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을 반영한다.
4.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 관세율은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2.5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그리고 각 당사국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전환이 이 부속서에 따른 관세 양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한다.
8. 한국의 경우, 관세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 라 한다)식으로 표현되며,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따라 규율된다.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9. 필리핀의 경우, 관세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통합관세품목분류표(이하 “AHTN” 이라 한다)식으로 표현되며,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AHT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따라 규율된다. 양허표의 규정이 이

에 상응하는 AHTN의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AHTN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 양허표

1. 이 부속서는 제2.15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그러한 상품에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아래에 포함된 바나나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8039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22,687	325,687	328,687	331,687	334,687	337,687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0	30	30	30	30	27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 (메트릭톤)	340,687	343,687	346,687	349,687	해당없음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24	21	18	15	0